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8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98. 9.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강석준)

가. 제안이유

- 공용건축물 공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공사의 전문화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나. 주요골자

- 건설교통국 시설과 → 시설사업소로 설치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공용건축물 공사업무 전담부서로 기존의 시설과를 시설사업소로 기구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반대의견 없이 전원 찬성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의안번호	40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공용건축물 공사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를 설치하여 공사의 전문화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제정

주요골자

- 건설교통국 시설과 → 시설사업소로 설치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공용건축물 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 공용건축물 신축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